

의안번호	2215718
의 퇴 인	주철현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4.
추 계 번호	25B7358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7조(벌칙) 제8호 삭제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<u><삭제>8.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 ※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, 폐기물의 검사·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한 벌칙 삭제	의무규정
	안 제39조(과태료) 제1항제8호 신설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1항) <u>8.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</u> ※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, 폐기물의 검사·조사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7조(벌칙) 제8호 삭제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39조(과태료) 제1항제8호 신설	

2. 상세 사유

- 현행법¹⁾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, 전문기관²⁾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시설·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·보관·처리 현황을 확인·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·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은 ‘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,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’에 대한 제재수단을 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에서 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’로 변경하려는 것임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제재수단

구 분	현행	개정안
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자료: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,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

1) 제32조(출입·검사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,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시설·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·보관·처리 현황을 확인·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·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3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8.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·검사·보고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2) 제25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양폐기물 조사기관: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 2.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: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 3. 해양배출 검사기관: 제7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·농도·무게·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

한 제재수단을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수단 변경에 따른 위반 행위의 증감, 과태료의 부과금액 등을 예측할 수 없고,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므로³⁾,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

3)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,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음